

의안번호	2210102
의 퇴 인	용혜인의원
회 답 일	2025.5.29.
추계번호	24D2529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74억 1,800만원, 2030년 191억 5,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13억 7,100만원(연평균 182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6,480	6,635	6,795	6,958	7,125	33,993	6,798
기본경비	6,660	6,820	6,984	7,152	7,323	34,939	6,988
사업비	4,278	4,380	4,485	4,593	4,703	22,439	4,488
합계	17,418	17,835	18,264	18,703	19,151	91,371	18,274

주: 본 추계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이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함	의무규정
4	안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등의 위원회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5조(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제1항),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둔다(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5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장기미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조사 부서를 둔다(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7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실규명 등의 과정, 피해자의 권리 보장,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18조(직원의 신분 보장)	위원회 직원간 진상규명 조사업무의 원활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협의회를 둠(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26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유해발굴단을 둠(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26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위원회는 조사·발굴에 따라 토지등의 출입이나 일시 사용 또는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의 제거·변경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12	안 제28조(청문회의 실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33조(검증)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검증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34조(조사기간)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되(제1항), 그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15	안 제40조(위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16	안 제49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과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1항),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7	안 제5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8	제59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	
2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	
3	안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4	안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	
5	안 제15조(사무처의 설치)	○	
6	안 제15조(사무처의 설치)	×	미추계: 장기미제사건 전담부서 설치
7	안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	
8	안 제17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	의견수렴의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의견 수렴의 규모와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9	안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	
10	안 제26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	미추계: 유해발굴단 설치
11	안 제26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	
12	안 제28조(청문회의 실시)	○	
13	안 제33조(검증)	○	
14	안 제34조(조사기간)	○	
15	안 제40조(위원 등의 보호)	○	
16	안 제49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17	안 제5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	현행법 제정(2005.12.1.)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존치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18	제59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특례)	×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존속기한은 최대 2025년 11월 26일까지임
 - 현행법 제25조¹⁾는 위원회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되, 그 기간 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2021.5.27.)과 진상규명활동(3년)을 한 후, 조사기간을 연장(1년)하였는데, 그 기한이 2025년 5월 26일까지임
 - 현행법 제32조²⁾는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하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대 2025년 11월 26일임
-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3기 위원회”라 함)를 시작하려는 내용으로, 현행법과 재정수반요인을 비교할 때 대부분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2] 개정안과 현행법의 재정수반요인 비교

	개정안	현행법
위원회 구성 (안 제5조)	총 1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7명)	총 9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조사기간 (안 제34조)	최대 7년 [활동기간 5년+2년(연장)]	최대 4년 [활동기간 3년+1년(연장)]
조직 신설 (안 제15조 및 안 제26조)	장기미제사건조사단(안 제15조제5항), 유해발굴단(안 제26조제1항)을 둠	유해발굴사업: 예산사업으로 진행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 (안 제17조)	업무수행의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함	-
협의회 설치 (안 제18조)	직원간 진상규명 조사업무의 협력 증 진을 위해 협의회를 둠	-
손실보상 (안 제26조)	타인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26조제6항)	손실보상: 예산사업으로 진행
피해배상·소멸시효 배제 (안 제49조 및 안 제59조)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희생자·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안 제49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안 제59조)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 2)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추계에서는 現 위원회의 예산내역, 정원, 보수지급방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3기 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를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現 위원회 정원: 136명(위원회가 보수 지급 81명, 원소속기관이 보수 지급 55명)
 - 現 인건비 편성: 정원 내 81명, 정원 외 임기제 공무원 26명 등 총 107명
 - 인력증원: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 등 총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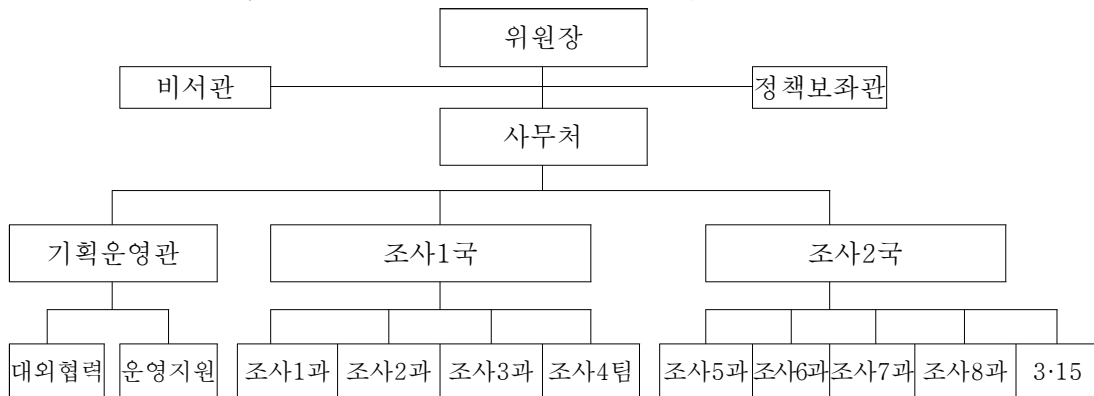
[표 3]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내역: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인건비	5,251	6,094	6,520	6,811	6,169
기본경비	5,924	5,954	6,800	6,686	6,341
사업비	2,566	7,029	3,429	3,266	4,073
합계	13,741	19,077	16,749	16,763	16,583

주: 2020년과 2021년은 인력과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므로 제외함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그림 1]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직도



- 다만, 장기미제사건조사단(안 제15조)·유해발굴단(안 제26조제1항),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안 제17조), 피해배상·보상(안 제49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배제(안 제59조), 협의회(안 제18조제3항)·유해발굴·손실보상(안 제26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장기미제사건조사단·유해발굴단(안 제15조 및 안 제26조제1항)
 - 현행 위원회 정원 범위에서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으나, 인력 증원을 통해 설치하는 경우 그 증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 진실규명 과정,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의견수렴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의견수렴의 규모와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 피해배상·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안 제49조 및 안 제59조)
 -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1기 위원회(2006.4.24.~2010.6.30.)의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대해서 그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배상 또는 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안 제49조제2항³⁾은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노동력상실률 등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 정도도 예측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직원협의회(안 제18조제3항), 유해발굴·손실보상(안 제26조):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 3기 위원회의 인건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⁴⁾을 적용하고,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인건비 대비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소관 예산이 12월 31일까지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제49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과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	2.4	2.4	2.4	2.4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3기 위원회의 인건비는 現 위원회의 인건비 평균액(2022~2025년)에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상임위원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한 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現 위원회의 최근 4년간 예산(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평균액과 인건비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4]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의 평균액: 2022~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대비 비중	주요내역	합계
인건비	—	(진화위 인건비) 6,169	16,583
기본경비	102.8%	(진화위 기본경비) 6,341	
사업비	66.0%	(진화위 운영) 4,073	

주: 기본경비에는 사무보조 인력(기간제 근로자 2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증원되는 상임위원 1명의 2025년 기준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비상임위원 1명의 회의참석수당은 추가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본경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표 5] 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보수: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소계	
상임위원(차관급)	145,378	11,400	1,680	480	13,560	158,938

주: 가족수당은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現 위원회 인건비(정원 내 81명, 정원 외 26명)와 개정안에 따라 증원된 상임위원(1명) 인건비를 합산하여 추정한 3기 위원회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음

[표 6] 3기 위원회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6,480	6,635	6,795	6,958	7,125	33,993

주: 2025년 기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및 사업비

- 3기 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최근 4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102.8%)과 사업비 비중(66.0%)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연도별 인건비에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한 3기 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표 7] 3기 위원회 기본경비와 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비중 (인건비 대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경비	102.8%	6,660	6,820	6,984	7,152	7,323	34,939
사업비	66.0%	4,278	4,380	4,485	4,593	4,703	22,4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74억 1,800만원, 2030년 191억 5,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13억 7,100만원(연평균 182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6,480	6,635	6,795	6,958	7,125	33,993	6,798
기본경비	6,660	6,820	6,984	7,152	7,323	34,939	6,988
사업비	4,278	4,380	4,485	4,593	4,703	22,439	4,488
합계	17,418	17,835	18,264	18,703	19,151	91,371	18,274

주: 본 추계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이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
한 것으로, 실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